



의안번호	제66호
의 결 년 월 일	2015. 11. 6. (제241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제출년월일	2015. 11.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나.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 조례 개정과는 관계없음
- 나. 합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다.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10.16. ~ 2015. 11. 5.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 구역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의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3.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휠체어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휠체어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동명 01 ~						
<b>장애인휠체어 수리 의뢰서</b>						
장애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일반					
장애인휠체어 유형 (3종)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p>「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 ○ 지정수리업체장) 귀하</b></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p> <p>② (생 략)</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p>	<p>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p> <p>② (현행과 같음)</p> <p>1. ----- <u>개별</u> <u>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u> <u>급여수급자</u> ----- ----- -----</p>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 (생 략)</p> <p>1. (생 략)</p> <p>2.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p>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관련 연간 소요예산은 23,500천원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지방한시임기제9호 이창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최종헌